기금관리 규정

2000. 1. 28.

(사)대한근대5종연맹

기금관리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8장(재산 및 회계)에 의거 본 연맹이 설치, 운영하는 기금의 관리,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 '기금'이라 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특별회계로 편입한 재산을 말한다.

② '기금출납담당이사' (또는'사무처장')라 함은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이사 또는 사무처장을 말한다.

③'기금출납원'이라 함은 기금의 지출 및 수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
2. 정부이외의 자가 출연(기부를 포함한다)하는 현금, 물품 기타 재산
3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
4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5.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
6. 정관 제 5 조 제 1 항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
7. 기타 일반회계 결산 잉여금, 기금결산 이월액 등의 여유자금

② 제1항의 재원을 기금으로 편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4조(기금의 관리, 운용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.

1.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
3. 본 연맹이 관리 주체가 되는 근대5종 수익사업에의 투자

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. 단, 기금의 대부분이 현금, 유가증

권등 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현금 회계방식으로 계리할 수 있다.

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본 연맹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④ 기금의 정확성을 기하고 기금계리의 부적정한 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기금으로 편입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등기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금의 사용) ① 기금원금은 정관 제 44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② 본 연맹 재정자립을 위하여 기금원금 50억원 미만일 경우 집행을 자제한다. 단 연맹 운영상 불가피 할 경우 **이사회, 총회 승인을 득한후**에 기금 과실금에 한하여 목적사업과 일반기관 운영비로 사용할수 있다.

제6조(기금운용계획) ①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전 1개월 이내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, 지출에 관한 사항
2.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3. 전년도 이월 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
4. 기금적립금에 관한 사항

제7조(기금의 회계직원) ① 회장은 이사 (또는 '사무처장')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(또는 '사무처장')를, 사무처 경리직원 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회계직원은 회계직 임명과 동시에 보증보험회사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, 보험료는 본 연맹에서 부담한다.

제8조(결산서 작성등)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,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. 다만, 제4조 제2항의 단서 조항에 의

하여 현금회계 방식으로 계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
3.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한 서류

4. 본 연맹 회계감사의 감사의견서

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본 연맹 결산서의 일부로 작성할 수 있다

제9조(보고) 제6조에 의한 기금운영계획과 제 8 조의 기금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규정개정) 본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(시행일) ① 본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③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2018년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